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재해를 경험·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부여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8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대재해를 경험·목격한 근로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	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6일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5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대재해를 경험·목격한 근로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현장실습생 포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이하 “심리안정휴가”라 함)를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요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56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6조의2(심리안정휴가 등)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이하 “심리안정휴가”라 한다)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의 요건, 기간, 신청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처 및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등이 법률이 정하는 직무¹⁾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4일의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 및 진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휴가를 병가가 아닌 특별휴가²⁾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³⁾

소방·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대근무를 주로 하는 현장 공무원이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⁴⁾을 겪어도 적절한 시기 내에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⁵⁾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의미함(해당규정은 참고자료 참조)

2) 사회통념 및 특별한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인사혁신처 홈페이지>공무원인사제도>복무제도>공무원휴가제도 참조)

3) 제20조(특별휴가)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로 죽음,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보람·김정규,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2014)」, 533면 참조)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경험·목격하였다면 심리안정을 위한 별도의 휴가를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심리안정휴가 요청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경험·목격한 근로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현행 「근로기준법」이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요양이나 휴업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어떠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심리안정휴가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재난이나 사고 등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 업무인 특정 직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써 심리안정휴가의 요건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의 경험 외에 그로 인하여 정신적 회복

5) 인사혁신처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현재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파악됨(인사혁신처 보도자료-“현장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휴식 가능” 참조)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담당 업무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있는 개정안도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정신적 회복 필요성 인정 여부를 요건으로 추가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심리안정휴가의 요건 중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을 경험한 것의 의미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서 타인이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해되고, 개정안에서 중대재해를 경험한 것은 근로자 자신이 중대재해를 당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중대재해를 입은 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및 제79조(휴업보상)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점⁶⁾에서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으로 규정할 별도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의 경우 소방·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충격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⁷⁾하고 있으며, 충격적 사건에 의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

6) 제78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7) '24년 전국 23개소, 최근 7년('18~'24년) 24,070명(2,751개 사업장)에 대해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

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호⁸⁾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①주요 대부분의 안전선진국들은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안정휴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②우리나라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상 제도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트라우마 센터의 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며, ③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포함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1

국가공무원 심리안정휴가 제도('23.7.18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 부여

제20조(특별휴가)① ~ ⑩ (생략)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심리안정휴가 대상 직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직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 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참고2

산업재해 발생 시 심리안정 관련 해외 사례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 외상성 사건 발생 후 심리적 관리방안을 제시(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2013)
 - 산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 심리적 안정화 전략으로, 외상 사건 스트레스 해소기법(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 제시
 - 외상후 스트레스 징후, 관리방안 및 심리치료 등과 관련한 교육 실시(Psychoeducation)
 -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Screening of developing symptoms)
 - 사건 이후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한 단기 휴식 부여
(Short breaks for highly strained person with single symptoms)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외상성 사건*(traumatic incident)으로 사건 현장에 참여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유지를 위한 권장사항 제시
(Traumatic Incident Stress, 2024.4.11.)
 - * 치명적 사건, 심한 부상을 입은 어린이 또는 성인, 시체나 신체 부위, 동료의 사망 등에 노출되는 사건
 - (인식) 사건 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증상 등을 인식시킴
 - (모니터링) 외상 사건 경험·목격자의 감정 및 신체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동료 근로자 및 주변인, 상담지원, 휴식과 운동 권고 등>

□ 미국 텍사스 주법 (Traumatic Events Leave Policy*)

* 정부코드 CHAPTER 614 - SUBCHAPTER A. (LEGISLATIVE LEAVE FOR PEACE OFFICER OR FIRE FIGHTER) - SUBCHAPTER A-1. MENTAL HEALTH LEAVE

○ 미국 텍사스 지방정부법, 트라우마 사건 발생시 휴가 제공

－ 미국 텍사스 경찰관 및 소방관을 포함한 시 공무원 대상

－ 아래 6가지에 해당되는 사건에 한정함

1.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폭발, 폭동 또는 군사적 적대행위로 대량 사망과 비상대응이 필요한 사건

2. 총기 또는 교통사고로 대량 사망사건 발생

3. 다른 공무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

4. 폭력 또는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

5. 폭력사건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

6. 인질 억류 사건

－ 대량 사망사건: 지역 산업보건 서비스 체계가 감당되지 않는 사건

－ 트라우마 사건 휴가(Traumatic Event Leave): 위에 정의된 사건을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유급 휴가

－ 심리안정 유급휴가는 3일 이며, 1차례 2일 연장 가능(총 5일)

참고3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충격적 사건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 바.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 나. (생략)

② ~ ⑤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같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